

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-437호
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4조, 제 21조, 제23조 및 제2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,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「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기준」, 「검정 및 재검정기준」 및 「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」 (이하, “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”이라 한다)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2년 5월 23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(안) 행정 예고

1. 개정 취지

전기자동차 충전기 분야 기술발전 대응 및 제조업체 불편 사항 개선,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충전량 표시 정확도 향상 등

2.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(안) 내용

- 부품 변경시 형식승인변경 적용가능 항목 확대 등
 - 부가전자장치, 전자파 관련 부품, 입력부 변성기 등 형식승인변경 항목 추가
 - 충전 케이블·커넥터 변경 형식승인변경 항목 세분화, 케이블 길

이를 범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- 계량성능과 무관한 외관색상, 단자대, 체결부품 등은 신고면제
- 기술발전 대응 및 규제 완화
 - 양방향 충전기 시험항목 명확화
 - 지시부의 가격 정보 표시 의무 삭제
 - 기준 전류 자율화
 - 시험순서 규정 삭제
- 충전량 표시 정확도 향상
 - 측정값의 표시 기본단위를 기존 '0.1 kWh 이하'에서 '0.01 kWh 이하'로 변경
- 명판 내용 기재방법 및 부착방법 규정
 - 부주의 등으로 인한 명판 훼손으로 사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 마련
- 기타 오기 수정 및 불명확한 문구 수정

3.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(안) : 붙임

4. 의견제출

[붙임]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,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에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 : 2022. 6. 13. (월)

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다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(주소 및 전화번호)

라. 단체인 경우(단체명, 대표자명, 주소 및 전화번호)

※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연락처

- 주소 :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(우 27737)

- 전화/fax/e-mail : 043-870-5511/043-870-5681/tomcat76@korea.kr